



제427회국회(임시회)  
제3차 환경노동위원회

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수렵면허시험에서의 실기시험 의무화 〉

■ 임종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855호)

2025. 7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제안경위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1 |
| 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              | 1 |
| III . 검토의견 .....                     | 2 |
| 1. 수렵면허시험에서의 실기시험 의무화 .....          | 2 |
| ※ 참고자료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| 6 |
| 1. 최근 3년간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의 총기 사고 현황 ..... | 6 |
| 2.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 .....              | 7 |
| 3.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현황 .....               | 7 |
| 4. 전국 클레이 사격장 현황 .....               | 8 |

## I. 제안경위

2024년 11월 26일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은 2024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, 시·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수렵행위는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에 대한 검증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2항 신설).

### Ⅲ. 검토의견

#### 1. 수렵면허시험에서의 실기시험 의무화

개정안은 수렵면허시험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45조).

#### [ 개정안 조문대비표 ]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5조(수렵면허시험 등) ①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<br><br>②·③ (생략) | 제45조(수렵면허시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br><u>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</u><br><u>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u><br><br><b>부칙</b><br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br>제2조(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적용례)<br>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|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,

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<sup>1)</sup>.

한편,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,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,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음<sup>2)</sup>.

이에 수렵자의 사격술 검증에 어려움이 있고 총기 오발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, 실제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의 총기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<sup>3)</sup>.

---

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(수렵장 설정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(이하 “수렵장”이라 한다)를 설정할 수 있다. 다만, 둘 이상의 시·군·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설정한다.

제44조(수렵면허)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.

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종 수렵면허: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
2. 제2종 수렵면허: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

2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5조(수렵면허시험 등)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(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) ① 별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,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.

②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.

3) < 참고자료1. 최근 3년간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의 총기 사고 현황 >

## [ 수렵면허제도 개요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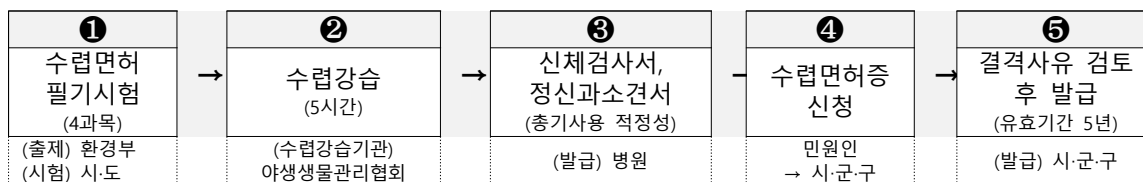
○ (목적)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포획하거나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로부터 수렵면허 취득

○ (수렵면허 종류)

- 제1종 수렵면허: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
- 제2종 수렵면허: 총기 외의 수렵 도구(활, 그물 등)를 사용하는 수렵

○ (수렵면허 취득 및 갱신절차)

- 신규취득: 수렵면허 필기시험 합격(4과목, 60점 이상) → 수렵강습 이수(5시간) → 서류 구비 → 면허 신청·발급



- 면허갱신: 5년 마다 수렵면허 갱신, 수렵면허 필기시험만 면제, 그 외 절차는 동일(②~⑤)

※ 출처: 환경부

개정안은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, 수렵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.

참고로 이에 대해 환경부는 ①총기사고의 대부분이 사람을 야생동물로 오인 사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격술 미흡 보다는 포획허가 지역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이었으며,

②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격실기 등의 교육 과정이 포함된 수렵강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<sup>4)</sup>, 수렵강습을 통하여 사격

4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수렵 강습)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

술 교육 및 검증 등이 가능하고,

③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경우 연간 1종 수렵면허 필기시험 합격자가 1천명 이상임에도 전국에 사격장이 10개소에 불과하여<sup>5)</sup> 시험장 확보가 어려우며, 시험장 구축도 입지선정의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므로, 개정안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---

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(이하 “수렵강습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수렵의 역사·문화,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.

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48조(수렵면허증의 발급 등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,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,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.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9조(수렵강습) ①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실시 예정일 30일 전에 그 일시·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습의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.

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.

5) 서울과 충남의 경우 사격장이 없음.

|       |
|-------|
| 문 의 처 |
|-------|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02)6788-5541 |
|--------------|

## ※ 참고자료

### 1. 최근 3년간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의 총기 사고 현황

| 연도   | 지역        | 가해자(경력)       | 피해정도 | 피해자 | 사고원인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|
| 2022 | 경상남도 창원시  | 수확기피해방지단(9년)  | 부상   | 수렵인 | 오인사고 |
|      | 서울특별시 은평구 | 수확기피해방지단(4년)  | 사망   | 민간인 | 오인사고 |
|      | 충청북도 청주시  | 수확기피해방지단(8년)  | 부상   | 수렵인 | 유탄사고 |
|      | 경상남도 영산시  | 수확기피해방지단(6년)  | 사망   | 수렵인 | 오인사고 |
|      | 충청북도 옥천군  | 수확기피해방지단(3년)  | 부상   | 민간인 | 오인사고 |
|      | 충청남도 서산시  | 수확기피해방지단(4년)  | 사망   | 수렵인 | 오인사고 |
| 2023 | 경기도 이천시   | 수확기피해방지단(23년) | 부상   | 민간인 | 유탄사고 |
|      | 경상북도 의성군  | 수확기피해방지단(7년)  | 사망   | 민간인 | 오인사고 |
|      | 충청북도 괴산군  | 수확기피해방지단(9년)  | 부상   | 민간인 | 오인사고 |
|      | 경기도 평택시   | 자력포획(16년)     | 부상   | 민간인 | 오인사고 |
|      | 충청북도 옥천군  | 수확기피해방지단(12년) | 사망   | 민간인 | 오인사고 |
| 2024 | 강원도 횡성군   | 수확기피해방지단(22년) | 사망   | 수렵인 | 오인사고 |
|      | 경상북도 영주시  | 수확기피해방지단(6년)  | 사망   | 민간인 | 오인사고 |
|      | 경상북도 경산시  | 수확기피해방지단(3년)  | 부상   | 민간인 | 유탄사고 |
|      | 전라남도 담양군  | 수확기피해방지단(8년)  | 부상   | 수렵인 | 유탄사고 |
|      | 경기도 하남시   | 수확기피해방지단(5년)  | 부상   | 민간인 | 유탄사고 |
|      | 경기도 연천군   | 수확기피해방지단(12년) | 사망   | 수렵인 | 오인사고 |
|      | 강원도 횡성군   | 수확기피해방지단(16년) | 사망   | 수렵인 | 오인사고 |

※ 출처: 환경부

## 2.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

(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0])

###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 (제59조제2항 관련)

| 강 습 과 목                       | 강 습 시 간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수렵의 역사·문화                     | 1시간                  |
|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          | 1시간                  |
| 야생동물의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| 1시간                  |
| 수렵도구의 사용법,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| 1시간<br>(실기 강습은 제외한다) |

비고

1.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은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.
2. 강습과목 중 수렵도구의 사용법,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은 강습 시간 외에 1시간 이상의 실기 강습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.
3.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제2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렵 강습을 면제할 수 있다.

## 3.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현황

(단위 : 명)

| 구분      | '20년  |       |    | '21년  |       |     | '22년  |       |     | '23년  |       |    | '24년  |       |    | '25년 상반기 |     |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|-----|----|
|         | 계     | 1종    | 2종 | 계     | 1종    | 2종  | 계     | 1종    | 2종  | 계     | 1종    | 2종 | 계     | 1종    | 2종 | 계        | 1종  | 2종 |
| 응시자 수   | 1,172 | 1,137 | 35 | 2,212 | 2,104 | 108 | 1,620 | 1,496 | 124 | 1,425 | 1,329 | 96 | 1,574 | 1,499 | 75 | 796      | 759 | 37 |
| 합격자 수   | 590   | 564   | 26 | 1,866 | 1,762 | 104 | 1,445 | 1,335 | 110 | 847   | 778   | 69 | 1,136 | 1,077 | 59 | 562      | 529 | 33 |
| 합격률 (%) | 50    | 50    | 74 | 84    | 84    | 96  | 89    | 89    | 59  | 59    | 59    | 72 | 72    | 72    | 79 | 71       | 70  | 89 |

※ 출처: 환경부

#### 4. 전국 클레이 사격장 현황

| 번호 | 사격장명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대구사격장     | 대구광역시 북구 문주길 170           | 053-312-0000 |
| 2  | 경기도종합사격장  |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격장길 142       | 031-352-6056 |
| 3  | 횡성스포랜드    |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로 380-57 | 033-344-2500 |
| 4  | 청주종합사격장   |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61           | 043-270-7300 |
| 5  | 단양사격장     |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장현로 207-17    | 043-421-7766 |
| 6  | 전라북도종합사격장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청운로 168-46 | 063-643-0104 |
| 7  | 전라남도국제사격장 | 전남 나주시 사격장길 82             | 061-333-5857 |
| 8  | 문경사격장     | 경북 문경시 사격장길 155            | 054-553-0001 |
| 9  | 창원국제사격장   |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99번길 63      | 055-712-0725 |
| 10 | 제주대유랜드   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로 381       | 064-738-0500 |

※ 출처: 환경부